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차장영업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착공일로부터 1년이내,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소방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과세면제) (생략) 〈신 설〉	제3조 (과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차장영업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착공일부터 1년이내, 준공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영업을 개시한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소방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제4415호. 1991. 12. 14)

제5조의 2 (도세) 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도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마권세

③ 도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주차장법(부분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로상주차장 :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것

나. 로외주차장 : 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것

제12조 (로외주차장의 설치) 1.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외의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